



인권·권익 침해 등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매뉴얼

다함께 힘
꿈을 이루는
참여공동체

202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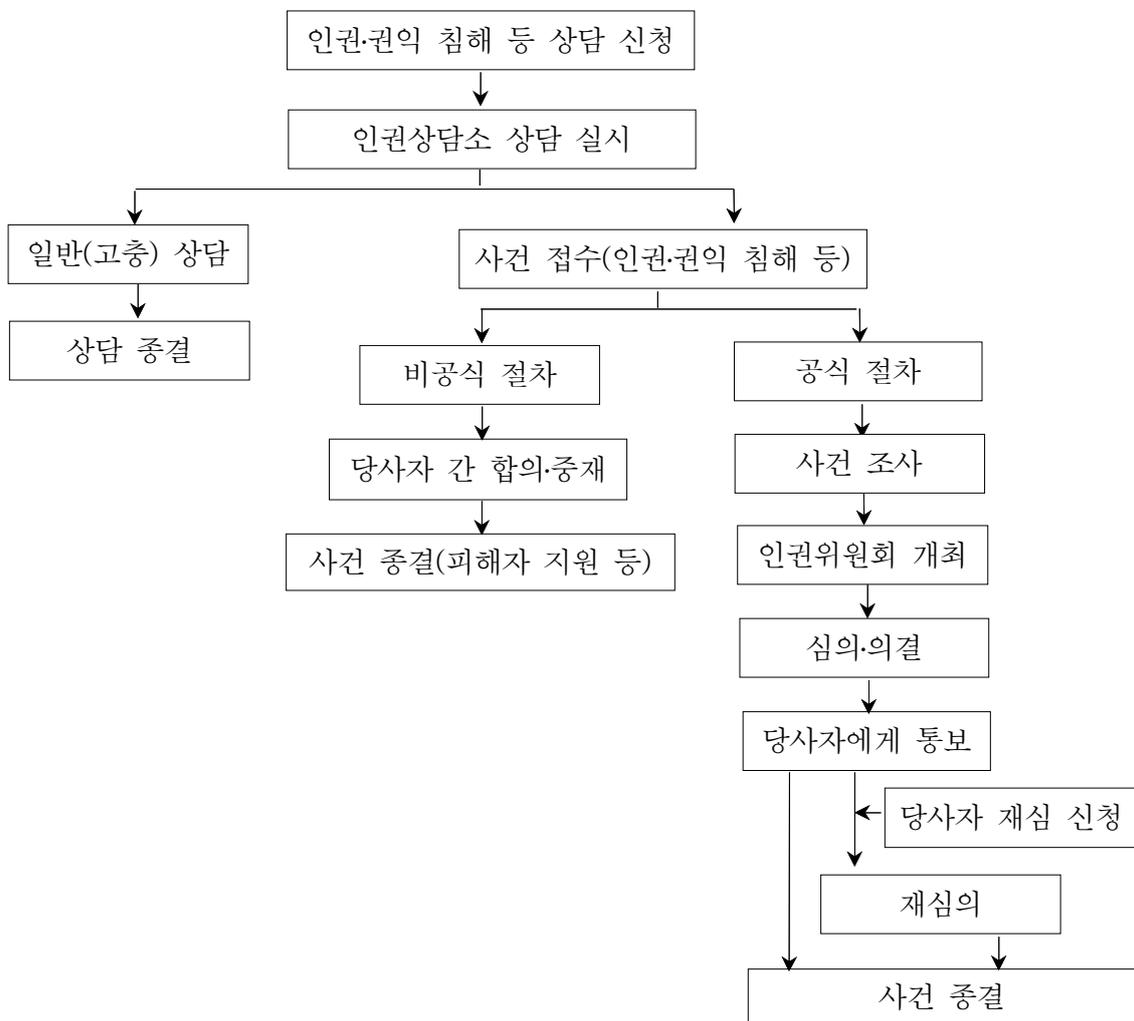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I.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36조(개별기본권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지침

II.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흐름도



Ⅲ.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세부 내용

1. 인권·권익 침해 등 상담 및 사건 접수

상담을 희망하는 개인은 인권·권익 침해 등(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인권상담소 상담 신청서 서식(붙임 1)에 의한다. 개인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동의서 등 확인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는 상담 신청 내용을 기초로 일반(고충)상담과 사건상담으로 구분한다.

1) 일반(고충)상담

일반(고충)상담은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상담을 통하여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로, 이때는 일반(고충)상담으로 분류되어 상담이 진행된다.

2) 사건상담

사건상담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인권침해 내용이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선 인권침해 등 사건 접수 시 처리절차 및 과정(공식절차, 비공식절차),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절차선택(공식절차, 비공식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사건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한다.

(1) 신청인이 비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신청인이 비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서 당사자 간 합의 및 중재(이때 인권상담소장 또는 소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2)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신고서 양식(붙임 2)에 따른 사건 접수를 받은 후 인권상담소장에게 즉시 보고된다.

3) 사건인지

인권침해 등의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사건 신고 및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권상담소에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구제조치 시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업권 보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인권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1) 사건조사

(1) 사건조사

사건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2) 다른 기관과의 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신청인(피해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인권상담소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인권위원회 개최

인권위원회는 인권상담소장의 인권위원회 소집 요청에 의해 개최되며, 인권위원회에

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서 내용 및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다만,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과정 역시 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인권위원회는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인권침해 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4) 당사자에게 통보 및 재심

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대한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만일 재심이 요구되면 인권위원회는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는 인권위원회 재적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사건 종결

인권위원회의 최종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 명령, 접근금지 명령,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붙임
1. 상담 신청서 1부.
 2. 인권·권익 침해 등 신고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2]

신고서

접수날짜: 년 월 일

사건번호:

접수자: _____ (서명)

신고인	이름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주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피해자	이름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주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대리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피신고인	이름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소속			학번 또는 직급		
	주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1. 피해사실

-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불이익을 당하였습니까?

① 때 :

② 장소:

③ 피해자와 피신고인간의 관계 :

이성친구 동료 (학과, 부서, 동아리의 동기 및 선후배) 교수

교직원 기타 (구체적: _____)

④ 피해 내용 (간단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피해발생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

⑥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피신고인의 반응

⑦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규정에 따른 가해자 처벌 등

법적 대응

개인적 수준의 대응

기타 ()

2. 증인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불이익을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 뒷면에 첨부하고 서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